##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45 발의연월일: 2021. 3. 2.

발 의 자:김승남·최종윤·양경숙

김회재 • 이원택 • 이형석

이성만 · 주철현 · 윤재갑

정청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개발·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

현행 항만법(2020. 1. 29. 공포, 2020. 7.30. 시행)은 전부 개정되면서 신규로 신설된 업무와「지방일괄이양법」제정 당시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사무가 존재함.

이에 「항만법」을 개정해「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관리항의 일부 항만개발, 운영 등의 사무를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이양사무 수행에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등).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 6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한다.

제12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해양수산부장 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17조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가"를 각각 "국가 또는 시·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13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3조제1항제7호·제8호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항만	③
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u>.</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	5
만개발사업(제15조제1항 단서	
에 따라 <u>국가</u> 에 귀속되지 아	<u>국가 또는 시·도</u>
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의 경우에	
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	
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	
사업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	
이 있을 것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본문에 따라 <u>해양수산</u>	⑥ <u>관리청의 허</u>
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u>가를 받은</u>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7) ~ ① (생 략)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생 략)

-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 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 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현행과 같
으는)
②
•
<u>관리청에</u>
③ 관리청

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의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한 후 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작성· 공고할 수 있다.

- ④ ~ ⑥ (생 략)
- ⑦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2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① 조 ~ ⑤ (생 략)
  - ⑥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u>관리청</u>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u>관리청</u>
세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리청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ㆍ

- ② (생략)
- ③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 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준공 전 사용기간을 산입한다.

### ④·⑤ (생 략)

-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비관 리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 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 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본 문에 따라 <u>국가</u>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u>국가</u>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는 <u>「국유</u> <u>재산법」 제44조</u>에도 불구하고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 또는 시·도</u>
<u>관리청</u>
<u>.</u>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u>국가 또는 시·도</u>
,
<u>국가 또는 시·도</u>
②
<u>「국유</u> 개산법」 제44조 또는 「공유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제1 항 단서에 따라 <u>국가</u>에 귀속되 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 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제15조제1항단서에 따라 <u>국가</u>에 귀속되지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설치한 토지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하는 하다. 다만, 해양수산부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u>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u>
제	17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u>국가 또는 시·</u>
	<u>도</u>
	,
제	18조(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
	설의 임대 금지)
	<u>국가 또는 시·도</u> -
	관리청
제	19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①
	<u>국가 또는 시·도</u> -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토지 및 항만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 다.

- 1. 2. (생략)
- 3.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양도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부터 15일이내에 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u>국가</u>에 기부채납한 자는 기부한 재산의 가액의 범 위에서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1.•2. (현행과 같음)
3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시·도에 기부채납하
는 경우
2
<u>관리청</u>
③
<u>국가 또는 시·도</u>
<u>관리청</u>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u>국가</u>에 기부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토 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u>국가</u>에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항만의 관리) ① (생 략)

② <u>해양수산부장관</u>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항 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u>국가 또는 시·</u>
<u>도</u>
5
<u>국가 또는 시·도</u>
제20조(항만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
<u>.</u>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del>등</del> ) ①
<u>관리청</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생 략)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② 관리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	
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③ <u>관리청</u>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	
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	
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④ <u>관리청</u>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	
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	
을 하여야 한다.	<b>.</b>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생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현

행과 같음)

②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1항에 ② <u>관리청</u>-----

략)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 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 여야 한다.
  - 1. <u>해양수산부장관</u>[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 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 허가를 받을 것
  - 2. <u>해양수산부장관</u>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 3. ~ 5.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1. <u>관리청</u>
2. <u>관리청</u>
3. ~ 5. (현행과 같음)

2	~	4	(생	리	<b>†</b> )			
제42:	조(현	항만	시설	의	사용	료	등)	1
~	4	(생	략	)				
<b>(E)</b>	剂	아스	:	ョコ	- 교 ㅇ	7.]	] / j)	-പി

- ⑤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 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 수) ① (생 략)
  - ②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1항 후 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 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④ (생 략)
-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① ~ ③ (생 략)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해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청
6
관리청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
제43조(비관리정 능의 사용료 징 수) ① (현행과 같음)
수) ① (현행과 같음)
수) ① (현행과 같음)
수) ① (현행과 같음)
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관리청</u>
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관리청</u>  ③·④ (현행과 같음)
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관리청</u>
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관리청</u>
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관리청</u>
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

- ⑤ (생략)
- 제98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 제) ① ~ ③ (생 략)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u>해양수</u> 산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 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 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 다.
  - ⑤ (생략)
- 제113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단서 신설>

⑤ (현행과 같음)
제98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
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해양수</u>
<u>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
⑤ (현행과 같음)
제11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u>다만, 제113조제1항제7</u>
호ㆍ제8호의 경우는 해양수산
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